

사전자산배분규정

< 차 례 >

제 1 조	목적 -----	3
제 2 조	적용 범위 -----	3
제 3 조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	3
제 4 조	용어정의 -----	3
제 5 조	자산배분 원칙 -----	4
제 5 조의 2	수요예측의 자산배분 원칙 -----	4
제 6 조	자산배분시스템 -----	4
제 7 조	주문서의 작성 -----	5
제 8 조	사전자산배분의 정정 -----	5
제 9 조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	5
제 10 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	6
제 11 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	6
제 12 조	운용담당자의 업무 -----	6
제 13 조	매매담당자의 업무 -----	7
제 14 조	준법감시부서의 감시 -----	7

사전자산배분규정

제정 2015. 12. 17

개정 2019. 07. 0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파인밸류투자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0 조제 1 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9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회사가 영 제 9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투자일임자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 80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 5 조(자산배분 원칙) ① 회사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③ 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사유를 '별첨 1'의 사전배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1. 법규, 규약, 운용지침, 운용계획서, 마케팅자료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운용제한사항의 위반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 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 정정
3. 상기 1,2 호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량 또는 투자신탁을 정정하는 경우

제 5 조의 2 (수요예측의 자산배분 원칙) ① 운용담당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참여 유형별 투자신탁의 순자산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미리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투자전략, 의무보유기간,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청약 주간 증권사로부터 최종 공모가와 배정수량이 확인되는 즉시 제 1 항에 따라 사전 배분된 수량을 기초로 배정받은 수량을 안분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의 대량 해지 등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청약 유형 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후 다른 펀드로 수량을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01]

제6조(자산배분시스템)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① 회사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1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① 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용담당자의 업무)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 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13조(매매담당자의 업무)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전자산배분 정정승인신청서

일 자 :

이미 체결된 사전자산배분 내역을 사전자산배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매매담당자	운용담당자	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		

순번	자산 종류	종목명	거래구분 (매수/매도)	원주문 펀드(OUT펀드)				배분 정정 펀드(IN 펀드)				정정 사유 코드
				펀드 코드	펀드명	운용 담당자	정정 수량	펀드 코드	펀드명	운용 담당자	정정 수량	
1												
2												
3												

사유 코드	정정사유	정정사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행위를 기재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오류 등 구체적인 원인)
1	법규, 규약, 운용지침, 운용계획서, 마케팅자료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운용제한사항의 위반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 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 정정	
3	결제자금 부족, 환매자금 부족, 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 첨부 : 정정 원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